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이재량  
대한민국 62243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발송일 (일/월/년) 2018년 11월 23일 (23.11.2018)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FA0687-PCT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8/009372**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8년 08월 16일 (16.08.2018)

우선일 (일/월/년)  
2017년 09월 07일 (07.09.2017)

국제특허분류(IPC)  
**G02B 6/44(2006.01)i**

출원인  
임채현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18년 11월 23일 (23.11.2018)

심사관  
강성철  
전화번호 +82-42-481-8405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a)).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1-6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없음	있음
	청구항	1-6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6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D1: KR 10-2016-0034762 A (임채현) 2016.03.30

D2: US 2014-0348479 A1 (CORNING OPTICAL COMMUNICATIONS LLC) 2014.11.27

1. 신규성 및 진보성

1.1 청구항 제1항 내지 제6항

1.1.1 독립항: 청구항 제1항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발명과 가장 근접한 인용문헌 D1에는 수용공간을 가지며 상부가 개구되어 있는 본체부(D1의 청구항 1 참조); 본체부에 회동 가능하게 결합되어 본체부의 개부된 상부를 개폐하는 개폐커버(D1의 청구항 1 참조); 본체부에 장착되는 지지플레이트(D1의 청구항 1 참조); 접속튜브저장트레이들(D1의 청구항 1 참조); 및 광심선 또는 광점프심선의 여장을 지지하는 제1,2여장수용부를 포함하는 제 1,2여장트레이들(D1의 청구항 1 참조)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인용문헌 D1에는 청구항 제1항의 특징인 광접속튜브저장부를 커버하기 위한 제1커버부재, 제1,2여장수용부의 가장자리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된 제2,3커버부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상기 차이는 동일 기술 분야인 인용문헌 D2에 트레이 베이스에 힌지 결합되는 트레이 커버(D2의 청구항 6 참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문헌 D2에 기재된 상기 특징을 결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은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추가 기재란에 계속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청구범위, 발명의설명 및 도면의 명료성에 관하여 또는 청구범위가 발명의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광접속튜브저장트레' 는 '광접속튜브저장트레이' 의 오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항은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므로 PCT 제6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청구항 제5항의 '상기 자세유지유닛' 은 처음 나온 구성이므로 의미가 불분명 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5항은 PCT 제6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1.1.2 종속항: 청구항 제2항 내지 제6항

청구항 제2항, 제4항, 제5항에 추가된 기술적 특징은 인용문헌 D2에 제시된 제거가능한 형태로 구성되거나 힌지 형태로 구성되는 구조로, 트레이베이스에 장착되는 디바이스 홀더(D2의 청구항 1, 도면 6A-6B 참조)로부터 단순히 설계변경 가능한 일반적인 기술사항에 해당됩니다.

청구항 제3항에 추가된 기술적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제시된 광심선을 지지하는 제1,2 지지리브(58,68)(D1의 단락 [0043]-[0045], 도면 11 참조)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6항에 추가된 기술적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제시된 접속튜브저장트레이(40)들의 각 하면에 형성된 힌지축(41)들이 삽입되는 힌지홀(32)들이 형성된 힌지브라켓(33)들이 설치되는 것(D1의 단락 [0033], 도면 1-10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용문헌 D1 및 D2에 기재된 상기 특징을 결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청구항 제2항 내지 제6항에 기재된 발명은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

청구항 제1항 내지 제6항에 기재된 발명은 PCT 제33조(4)에 따라 산업상 이용가능합니다.